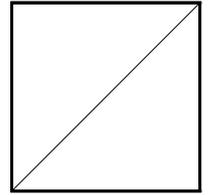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9 호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23. 1. 18. (제 1 차)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 18.

## 1. 의결주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9.5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4.5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11.5백만원 부과

###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4. 참고사항

###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2022.9.14.) 심의필
-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022.12.14.) 심의필
- 제1차 임시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1.18.) 심의필

<별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 에 대한 조치(4명)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및 과태료 28.6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9.5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6.9백만원 부과
- ▲▲▲ : 과태료 11.5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및 제6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 2. 조치사유

###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①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지수선물,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③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④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주식선물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 대부분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①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송 관리, 자산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주식·선물 매매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위와 같이 △△△으로 하여금 ●●●●●(주)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449조(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직하게 하거나 검직한 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2	02-3145-7630